

지역사회임팩트센터 운영 규정

제정 : 2022. 09. 02.

지역사회임팩트센터(02-950-5465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명칭)	제3조(사업)	제4조(조직)
제5조(임무)	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)	제7조(재정)	
제8조(회계연도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본 대학교의 특성화 센터로 지역사회임팩트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) 본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회교육
2.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과의 학술교류 사업
3.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
4. 세미나, 강연회, 학술회의 등의 개최
5. 학술지, 전문도서, 연구자료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
6.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과 연구원은 학사 부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센터장과 연구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

제5조(임무)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센터 운영을 담당한다.

③ 사무직원 및 조교는 센터장 및 연구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센터의 사무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본 센터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이는 "사회봉사운영위원회"를 겸한다.

1. 센터 추진 정책 연구 참여 및 지원

-
2.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봉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지원
 3. 지역사회 및 사회봉사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
 4. 학생·교직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계획 수립
 5.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6. 운영 기금의 확보 및 관리
 7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7조(재정)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칙에 따른다.

제8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